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투자신탁 명칭 변경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트러스톤 <u>백년대계 EMP50</u>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 3. ~ 6. (생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트러스톤 <u>디딤 백년50 EMP</u>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 3. ~ 6. 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u>